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창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1. 11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창녕권역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범위 내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범위 내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 유지관리 및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함

1.2 계획의 추진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종류)」 [별표2]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본 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준비서상에서 별도의 토지이용 구상안을 선정하지 않았음

1.2.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근거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하천의 공사를 시행하려면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제25조 (하천기본계획)	제24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9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물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7.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추진경위 및 계획

- 2018. 06 : 하천기본계획 과업 착수
- 2021. 05 : 종·횡단 측량 완료
- 2021. 10 ~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심의위원 구성 포함)
- 2022.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22.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예정)
- 2022. 12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예정)

1.4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창녕권역 하천기본계획

-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창녕권역 지방하천(6개소)

나.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성주군,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창녕군(과업연장 92.88km)

다. 대상하천규모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km ²)	하천연장(km)	비고
장 천	지방	61.41	11.60	대구지방환경청
이 천	"	127.38	19.10	
진천천	"	74.67	6.30	
차 천	"	93.26	8.88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토평천	"	123.71	30.00	낙동강유역환경청
창녕천	"	38.18	17.00	
계		518.61	92.88	

라. 계획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바. 계획수립기간 : 2017 ~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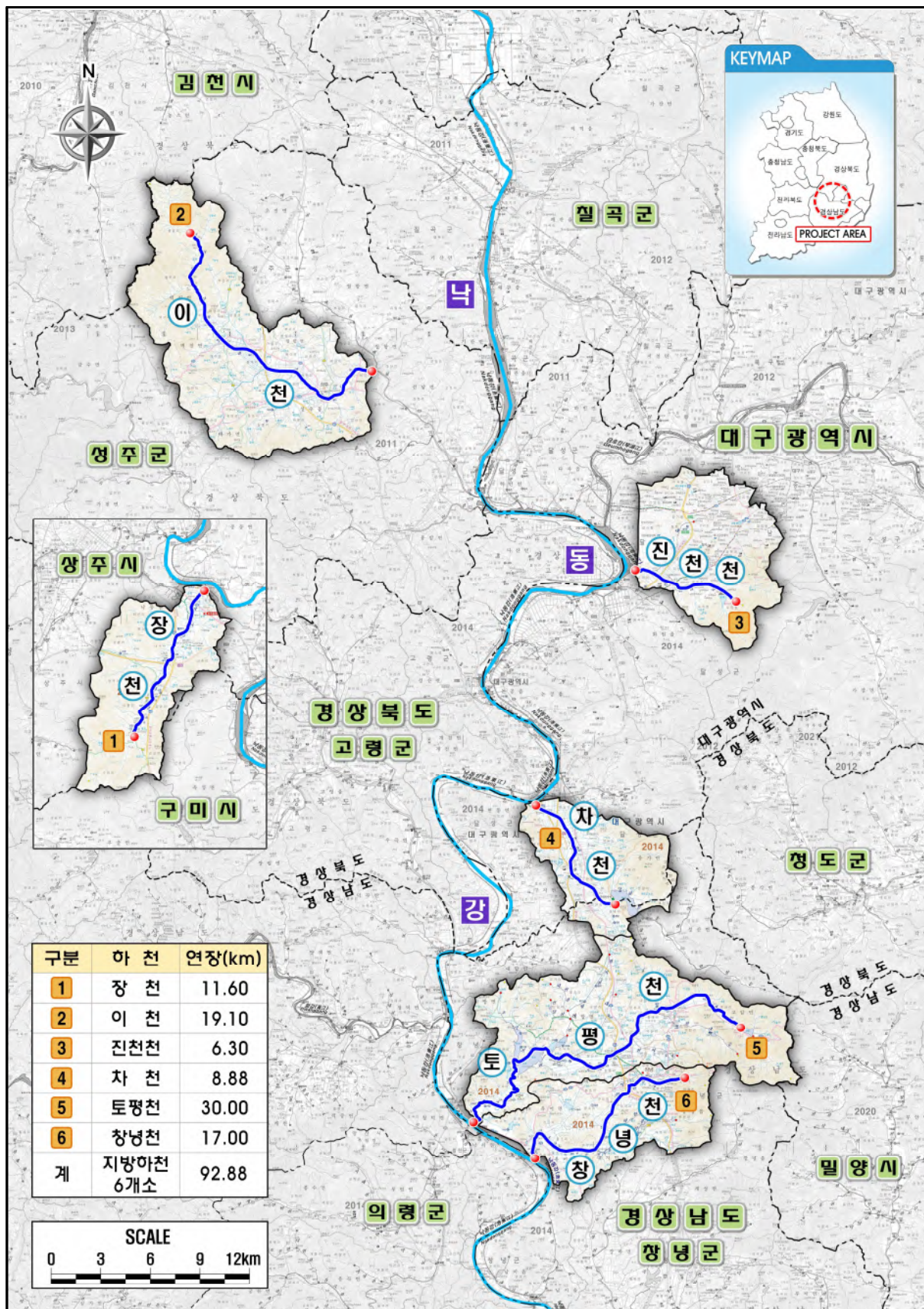
사. 계획내용

1) 계획의 범위

○ 지방하천 장천 외 5개소 92.88km

〈표 1-1〉 계획대상 하천 현황

하천명	하천 등급	시 점	종 점	고시연장 (km)	과업연장 (km)	하천지정근거 및 일자
장 천	지방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강(국가)합류점	11.60	11.60	경 북536호 (1966.04.22.)
이 천	지방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용암리	경북 성주군 월항면 백천(지방)합류점	19.10	19.10	경 북536호 (1966.04.22.)
진천천	지방	대구 달서구 도원동	대구 달성군 화원읍 낙동강(국가)합류점	6.30	6.30	대 구64호 (1989.05.15.)
차 천	지방	경남 창녕군 성산면 후천리	대구 달성군 현풍읍 낙동강(국가)합류점	8.88	8.88	대 구241호 (1997.08.20.)
토평천	지방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감리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국가)합류점	30.00	30.00	경 남271호 (1982.11.29.)
창녕천	지방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경남 창녕군 유어면 낙동강(국가)합류점	17.00	17.00	경 남271호 (1982.11.29.)
계		지방하천 6개소		92.88	92.88	-



(그림 1-1) 계획하천 위치도

2) 하천기본계획 내용

가) 치수, 이수, 환경이 조화된 하천기본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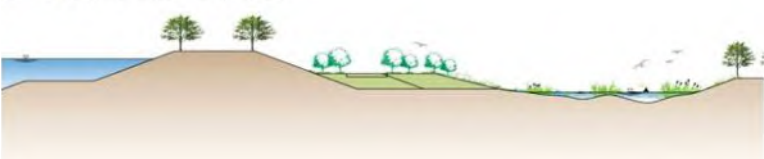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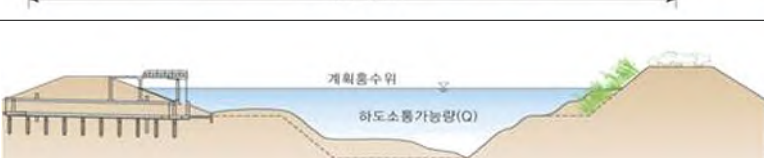
- 하천 치수상의 안정성 확보 및 하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 고려
- 생태환경 고려한 사면보호, 유지유량 확보 등을 통한 친환경적 하천조성
- 치수 및 이수기능, 환경보전 뿐 아니라 인간생활과 조화로운 하천조성

나) 홍수량, 홍수위, 하폭, 하천구역, 홍수방어계획빈도 결정

- 하천의 계획홍수량을 고려한 횡단계획 수립
- 향후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홍수방어계획 수립
- 가용 가능한 하천부지 활용 및 주민 사유권침해 최소화 계획 수립

다) 하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 폐천부지 및 유휴지를 이용하여 본래 하천공간복원 계획 수립
- 하천의 생태기능 보존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 하천부속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조화로운 하천관리		
안전한 하천관리		
바람직한 하천관리		

3) 유형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방향

구분	산지 하천	농경지 하천	도시 하천
정비 방향	· 사방댐 설치 · 안정하상 계획 · 횡단구조물의 충분한 통수능력과 공간확보	· 직강화 지양 · 하천공간 복원(홍수터, 천변저류지, 습지 등) · 생태환경적이며 안전한 호안공법 도입	· 하천공간 복원(천변 저류지) · 생태환경적이며 안전한 호안 공법 도입 · 자연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수시설 도입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대상지역의 설정

2.1.1 개발계획의 대상지역

- 본 계획은 강정고령보·합천창녕보·낙동창녕권역 6개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하천이 위치하는 경상북도 상주시, 성주군,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구역을 공간범위로 설정함

〈표 2-1〉 공간범위 설정

구 분	도	시	구·읍·면	대상하천	협의기관
1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장천	대구지방 환경청
		성주군	벽진면, 대가면, 성주읍	이천	
2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화원읍	진천천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차천	
3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차천	낙동강유역 환경청
			창녕읍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고암면	토평천	
			창녕읍, 유어면, 대지면	창평천	

〈표 2-2〉 하천별 공간현황

하천명	하천 등급	시 점	종 점	고시연장 (km)	과업연장 (km)
장 천	지방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강(국가)합류점	11.60	11.60
이 천	지방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용암리	경북 성주군 월항면 백천(지방)합류점	19.10	19.10
진천천	지방	대구 달서구 도원동	대구 달성군 화원읍 낙동강(국가)합류점	6.30	6.30
차 천	지방	경남 창녕군 성산면 후천리	대구 달성군 현풍읍 낙동강(국가)합류점	8.88	8.88
토평천	지방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감리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국가)합류점	30.00	30.00
창녕천	지방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경남 창녕군 유어면 낙동강(국가)합류점	17.00	17.00
계		지방하천 6개소		92.88	92.88

2.1.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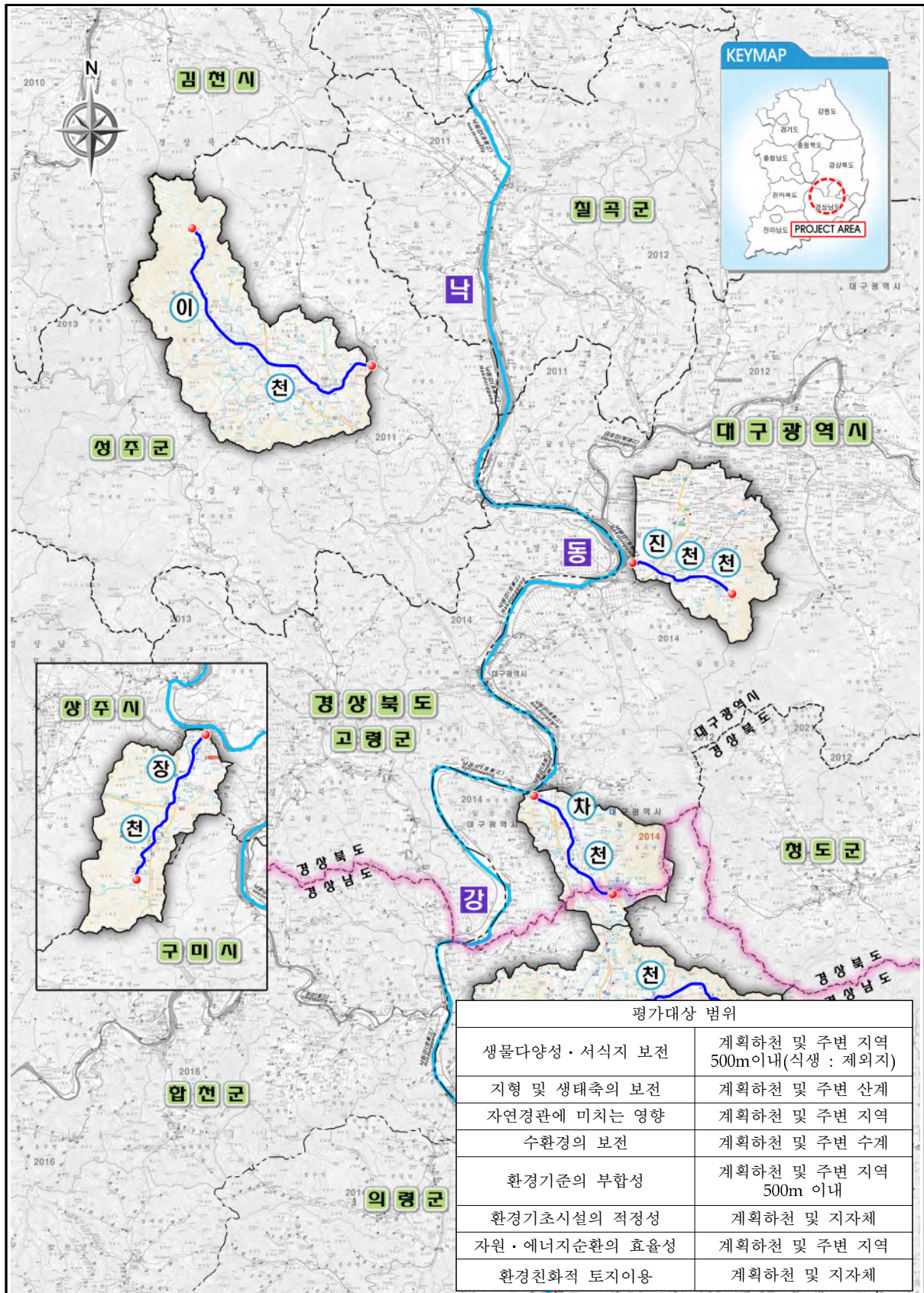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특성,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환경영향 요인 분석을 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협의회 의견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별로 대상지역을 설정함
 - 대구지방환경청 : 장천, 이천, 진천천, 차천
 - 낙동강유역환경청 : 차천, 토평천, 창평천

가.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 대구지방환경청 관할구역인 계획하천 대상지역 설정은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 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 선정기준
1. 계획의 적정성	-	-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하천 및 지자체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부합여부 파악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 대안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	-
가. 자연환경의 보전	-	-
1) 생물다양성·서식지보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 현지조사 500m 이내 (단, 식생은 작성 규정에 따라 하천 제외지 조사시행)	·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류군별 조사범위 고려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하천 및 주변 산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 하천기본계획 구간, 주변 경관자원 분포 및 경관변화 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4) 수환경의 보전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 계획시행시 하천수질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시 수리·수문 변화 및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
1)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500m)	· 하천정비시 기상, 대기질 변화 ·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 소음·진동 등 영향 예상지역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하천 및 지자체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공급 필요성 예상지역
3)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 계획시행시 폐자원 발생 및 온실가스 변화 예상지역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하천 및 지자체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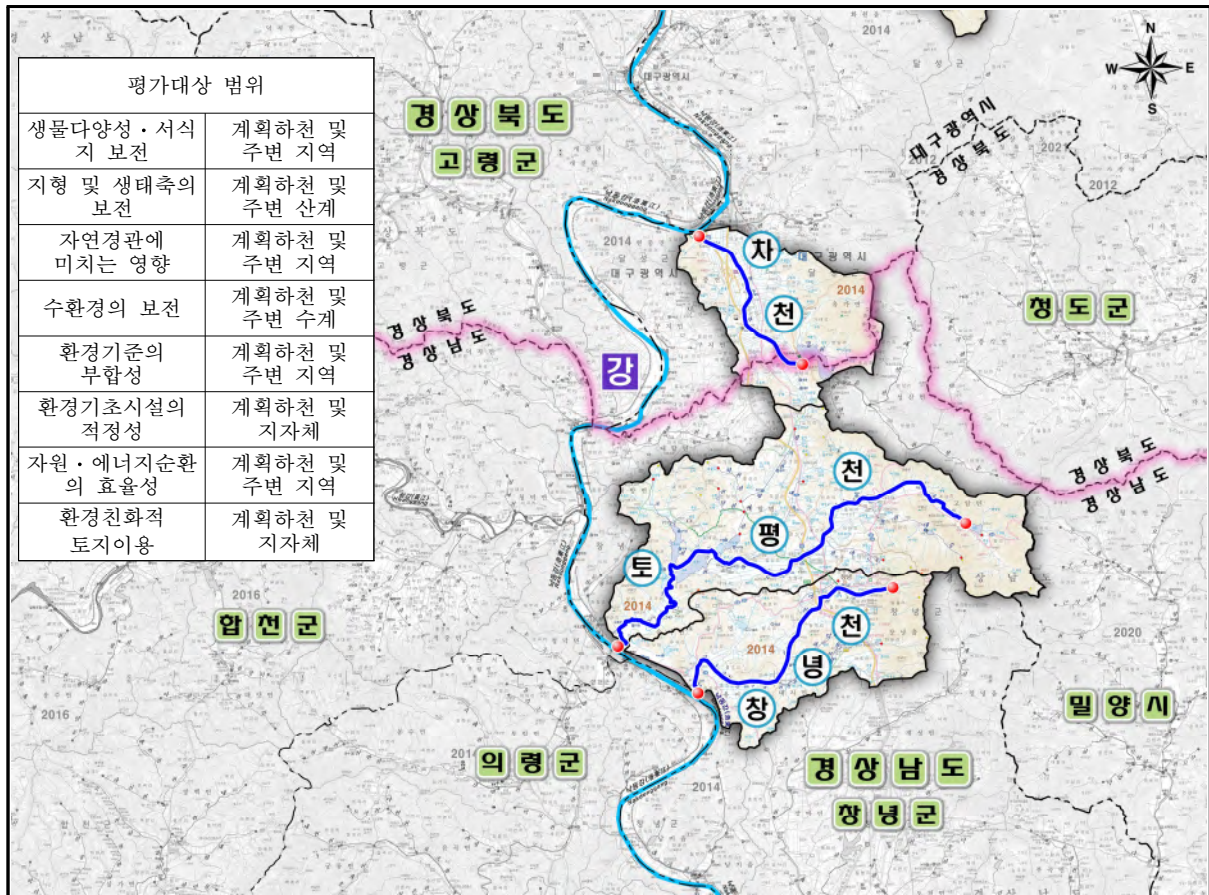
(그림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장천, 이천, 진천천, 차천)

나.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구역인 차천, 토평천, 창녕천 대한 대상지역 설정은 협의회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차천 계획하천 구간은 상류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구지방환경청 관할구역에 해당하므로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대상지역에 준하여 범위를 설정함

〈표 2-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 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 선정기준
1. 계획의 적정성	-	-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하천 및 지자체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부합여부 파악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 대안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	-
가. 자연환경의 보전	-	-
1) 생물다양성·서식지보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하천 및 주변 산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 하천기본계획 구간, 주변 경관자원 분포 및 경관변화 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4) 수환경의 보전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 계획시행시 하천수질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시 수리·수문 변화 및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
1)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 하천정비시 기상, 대기질 변화 ·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 소음·진동 등 영향 예상지역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하천 및 지자체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공급 필요성 예상지역
3)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 계획시행시 폐자원 발생 및 온실가스 변화 예상지역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하천 및 지자체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그림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토평천, 창녕천)

2.2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설정

- 본 하천기본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 가 항 목	선정 사유 및 주요 검토내용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부합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 전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각종 보호지역,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가능성 여부 등의 검토 필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요 산림축의 훼손,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여부 등의 검토 필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구간 및 주변 경관 자원 등의 영향 여부 검토 필요
		·수환경의 보전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검토 필요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위 등 변화 평가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계획 시행시 국가, 지역 환경기준 등의 유지·달성 여부의 검토 필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기초시설 공급 필요 여부 파악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 시행시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검토
	사 회 · 경 제 환 경 과 의 조 화 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상의 변화 검토 ·공간환경관리계획

2.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조사·예측·평가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2-6>과 같음
- 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7.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2013, 환경부」에 준하여 기존자료(국가측정망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임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환경영향 정도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계획임

<표 2-6>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현황, 식물상 및 식생현황,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 조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장천, 이천, 진천천, 차천은 현지조사 500m(식생:제외지))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 산계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주변 자연경관 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위락·경관현황, 경관자원 현황, 환경관련지역 및 지구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하천기본계획수립 구간 및 주변의 경관자원 분석과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 등의 영향 예측

〈표 2-6〉 계속

구분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 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표수(하천), 하천저질현황 농도, 오염원현황, 계획구간 및 주변하천, 재해 및 수해복구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③ 조사방법 : 측정망 및 수계를 고려한 현지 및 문헌조사 실시 ④ 조사지점 : 하천별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검토 ○ 계획하천의 유지 목표수질 검토 ○ 오염부하량 검토 ○ 계획구간의 홍수량 및 홍수위 등의 수리수문 변화 검토 ○ 홍수대책 등의 치수계획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① 조사내용 : 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 진동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장천, 이천, 진천천, 차천 500m)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최근 기상현황 통계자료 분석 ○ 환경현황(대기질, 토양, 소음· 진동) 측정망 자료 조사 ○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기준(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의 유지· 달성에 대한 검토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관할 행정구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환경기초시설 공급 필요여부에 대한 정성적인 검토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에 따른 폐자원 발생 검토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사회· 경제환 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관할 행정구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검토

2.2.3 항목별 현황조사계획

- 환경영향 평가항목 중 본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질, 동·식물상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항목 조사계획을 수립함

가. 대구지방환경청 관할(장천, 이천, 진천천, 차천)

- 관련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항목별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함

〈표 2-7〉 환경현황조사계획

항 목		조사지점	횟수	비고
환경질 조사	하천수질	15	2	하천연장 45.88km
	하천저질	15	2	
식 물 상		장천 등 4개 하천	1	
육상동물	포유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장천 등 4개 하천	1	
	조류	장천 등 4개 하천	1	
육수동물	어류	장천 등 4개 하천	1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장천 등 4개 하천	1	

- 주) 1. 필요시 생태계 조사를 추가하되 향후 단계(실시계획)에서 추가조사 시행
2.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은 주변지역 측정망 또는 문헌조사 결과 제시

〈표 2-8〉 환경현황 조사항목

구 분	조사(지점)	조사항목
하천수질	15 (약 3km 당 1지점)	○ 31개 항목 - pH, BOD, COD, DO, SS, TOC, T-N, T-P,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총대장균군, PCE, 수은, 유량,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포름, DEHP, 안티몬,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하천저질	15 (약 3km 당 1지점)	○ 13개 항목 - COD, T-N, T-P, Cd, Pb, As, Ni, Hg, Cr, Cu, Zn, 강열감량, 입도분석
동·식물상	계획하천	○ 식물상 및 식생 - 식물분포 및 식생도, 노거수 및 보호수, 기타특정식물군락 분포 현황 ○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분포 현황 - 법정보호종,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분포 현황 ○ 육수생물상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분포 현황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의 분포 현황

- 주) 조사지점은 하천연장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

나. 낙동강환경청 관할(차천, 토평천, 창녕천)

○ 관련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항목별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함

〈표 2-9〉 환경현황조사계획

항 목		조사지점	횟수	비고
환경질 조사	하천수질	16	2	하천연장 47.00km
	하천저질	16	2	
식 물 상		토평천 등 3개 하천	1	
육상동물	포유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토평천 등 3개 하천	1	
	조류	토평천 등 3개 하천	1	
육수동물	어류	토평천 등 3개 하천	1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토평천 등 3개 하천	1	

- 주) 1. 필요시 생태계 조사를 추가하되 향후 단계(실시계획)에서 추가조사 시행
 2.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은 주변지역 측정망 또는 문헌조사 결과 제시
 3. 차천 조사지점은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환경조사계획에 포함(〈표 2-7〉 환경현황조사계획)

〈표 2-10〉 환경현황 조사항목

구 분	조사(지점)	조사항목
하천수질	15 (약 3km 당 1지점)	○ 31개 항목 - pH, BOD, COD, DO, SS, TOC, T-N, T-P,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총대장균군, PCE, 수은, 유량,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포름, DEHP, 안티몬,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하천저질	15 (약 3km 당 1지점)	○ 13개 항목 - COD, T-N, T-P, Cd, Pb, As, Ni, Hg, Cr, Cu, Zn, 강열감량, 입도분석
동·식물상	계획하천	○ 식물상 및 식생 - 식물분포 및 식생도, 노거수 및 보호수, 기타특정식물군락 분포 현황 ○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분포 현황 - 법정보호종,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분포 현황 ○ 육수생물상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분포 현황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의 분포 현황

주) 조사지점은 하천연장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3.1.2 의견수렴 경위

- 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3.1.3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초안 공람·공고(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
 - 주민은 공람 후 7일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지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지 공람기간 중 1회 실시(설명회 장소는 해당 지자체와 추후 협의)
 - 설명회 개최 7일 전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임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관할 지자체 협조 하에 현수막 설치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임

3.2 의견수렴결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의견 수렴결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요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 4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주관부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심의기간 : 2021년 10월 01일 ~ 10월 28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창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심의위원

구분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책	관련하천	소속
위원장	1	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국장	A	승인기관 (계획수립기관)
위원	2	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과장	A	계획수립기관
	3	장○○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B	협의기관
	4	박○○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C	
	5	정○○	계명대학교	교수	B	
	6	박○○	KEI환경평가본부 자원에너지평가실	실장	C	민간전문가 (협의기관추천)
	7	정○○	신성엔지니어링	부사장	A	민간전문가 (위원장 위촉)
	8	황○○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과장	장천	지자체
	9	김○○	성주군청 환경과	과장	이천	
	10	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환경보호과	-	진천천	
	11	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환경과	과장	차천	
	12	박○○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팀장	C	
	13	권○○	상주시 이장협의회	회장	장천	주민대표
	14	이○○	성주군 상록회	회장	이천	
	15	이○○	달서구 진천동 통우회	통장	진천천	
	16	백○○	달성군 현풍읍	이장	차천	
	17	김○○	창녕군 이장협의회	회장	C	
	18	김○○	자연보호 상주시협의회	회장	장천	민간전문가 (시민단체추천)
	19	구○○	자연사랑연합 성주지회	회장	이천	
	20	장○○	달성군 자연보호협회	감사	진천천	
	21	박○○	국토사랑범창녕시민연대	회장	C	

※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및 해양관련 전문가는 해당없음

※ 관련하천 A : 공통위원, B : 장천, 이천, 진천천, 차천, C : 차천, 토평천, 창녕천

4.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4.2.1 대구지방환경청 관할(장천, 이천, 진천천, 차천)

- 협의회 심의의견중 공통위원 및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하천(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 주민대표, 민간위원 등)의 심의의견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남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판 의 건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대상 하천 주변의 영향예상지역과 주변지역 자연생태환경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적절히 선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본 계획의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 구상안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대안 ○ 대안별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안 검토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방법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 계획에 따른 영향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 생태계 조사는 직접 조사인력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주변 생태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임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10. . 심의위원 안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결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남권역 하천기본계획] 사 업 개 요 ○ 위 치 - 장천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상주시 낙동면 낙동강(국가)합류점 - 이천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용암리-상주시 월항면 백천(지방)합류점 - 진천천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달성군 화원읍 낙동강(국가)합류점 - 차천 : 경남 창원군 상산면 후천리- 달성군 현풍읍 낙동강(국가)합류점 ○ 규 모 : 하천 총 연장 45.88km(장천 11.6, 이천 19.1, 진천천 6.3, 차천 8.88) ○ 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제2호 자목「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총 판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 보존·유지 및 보호구역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민원해소 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등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함. - 1 -
2 심의의결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이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여야 함. -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구간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 -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 ○ 대상지역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면에 표기하여야 함. □ 토지이용 구상안 ○ 개별 하천의 생태적 특성 및 하천의 규모, 자연성과 인접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홍수빈도를 산정하고 홍수관리구역 설정 등의 다양한 대안 비교를 통해 친환경적인 하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상 하천 및 구간을 각 하천의 현황에 맞도록 분류하여 체계적인 사업시행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 하천구역 내 친수지구는 가급적 자체하되, 필요시 최소한의 구역에 한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계획(임지가능 시설 설정 등)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초안 작성 시 해당 구역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사진 및 도면을 제시하고 친수지구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제시 - 하천 합류부 및 생태적 연결성이 건강한 지역의 친수지구 설정 지양 ○ 제방 및 호안정비 계획은 계획홍수위·하폭·제방 높이를 검토하여 통수 능력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최소한으로 수립하고, 자연 하천 구간은 보전하는 등 불필요한 공사 계획은 지양 - 2 -	□ 대안 ○ 대안 선정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하천개수와 재해방지 및 치수를 위한 하천 홍수빈도 조정 등의 다양한 대안을 비교·분석하여야 함. - 3개 이상의 대안(action의 다양화)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설정 1. 평가 항목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세부평가항목을 적용하여야 함. -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주변지역 여건,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구분·설정 2. 평가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 계획구간 주변과 수생태계에 법정보호종을 포함하여 야생생물 출현 여부에 대한 문헌 및 현지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해당 보호지역이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조사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수경, 보완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따라 생태자연도 현황을 작성 - 문헌조사 시 “거울철조류 동시센서스(환경부)”, “제4차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포함하고, 현지조사 시 평가범위는 500m 이상으로 설정(법정보호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서식지 및 활동범위까지) - 자연생태환경 현지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조사시기(식물,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등)에 - 3 -

따라 실시(자율철새 등 동절기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동절기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보전·저감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구간 중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사유제사), 철새도래지, 내륙습지, 상수원보호구역, 별도관리지역이 포함되거나 인접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사) 가급적 개수계획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향 여부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조(환경부 훈령 제1161호, '15.7.17) - 생태계교란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식생활작 및 소형동물의 수생태계 접근성을 제약하는 호안공법(메트리스 돌망태, 옹벽, 급경사 호안·보축)은 지양하여야 함. · 하천과 주변역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자연적인 수변식생역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완사면의 식생활작이 가능한 공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호안공사 지점의 유속 및 소류력 규모를 정밀 진단하여 식생계(식생메트 등) 완경사 호안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 홍수방어벽은 하천 횡단면상 수변부의 수직단차를 유발하는 공법으로 생태적 연결성과 야생동물의 접근성을 제약하므로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측세 및 하폭 확장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범정부호종 및 소형동물의 탈출 및 이동을 위한 측구의 설치 등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주거밀집지역 등 야생동물 회피지역은 설치하되, 산자·농경지 및 인구 밀도가 낮은 구간은 완경사의 친환경 호안공법·보축 등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토양, 대기질, 소음·진동 -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구역은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값을 제시하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대기질 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최소 500m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제시된 항목 모두 측정·분석 (PM-2.5 포함) ○ 수질 및 수리·수문 - 하천별 철저한 수질·저질조사 및 원인분석, 비점오염원 유입 현황 조사를 통해 하천수질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2회 이상 수질·저질조사(감수기·평수기·홍수기 등)를 실시하되, 조사지점 및 추가 횡수 등은 주변환경, 하천특성, 연장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정 - 하천저질 오염도 평가는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연구 제687호, '15.11.16)」를 참조(항목, 기준치 등)하여 평가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하천 별로 규모(하폭, 유역면적 등) 및 인접 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인 하천홍수빈도 설정이 아닌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방 등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정확한 홍수량 산정 및 과거 홍수 이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과도한 개발(임야부 절토), 하상정비는 지양하는 등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변 수리시설 능력을 파악과 현재 경작 활동을 확인(전·담 태양광 설치 등)하여, 현재 불필요한 횡적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 홍수위 저감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 하천시설물 능력검토를 통해 기능이 저하·소멸된 시설물은 철거하고 신규 및 재가설은 지양(기존, 존치, 철거, 신설 계획 제시) ○ 경관 -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 여부를 검토·예측하여 사업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 수립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따라 영향분석을 면밀히 실시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주민 의견 수립 시 의견서 등은 제출자 본인 작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공람기간 선정 시 공·휴일은 제외하고,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충분히 홍보(공람기간 20일 이상) - 사업추진 진반(시설물 철거 등)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 추가 홍보(안) :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등 □ 기타 ○ 각종 현황조사 자료에 대한 현행화 및 도면 등은 육안판독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도면 등은 육안판독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대,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범례를 명시, 환경 현황 측정지점을 명확히 표시 ○ 환경 현황조사 시에는 법적 환경기준에 맞게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대기질, 수질, 저질, 소음·진동 등), 조사항목, 지점, 주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우리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저가 발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방지하고자 평가 용역의 저가 발주 여부 등을 중점검토하고 있음. - 평가서에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첨부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운영지침(환경부, '12.10월)」 참조 ○ 사업자는 본 심의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우리청에 평가서 제출 시 5개 하천 통합본이 아닌 복천 및 동일수계 하천만 평가서를 분리하여 제출하기 바람. 2021. 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소 속 : 대구지방환경청 성 명 :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남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낙동강남권역 영향평가로 사용된 평가항목·범위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 구상안은 적절함. 3. 대안 ○ 대안설정은 적절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범위·방법 등은 적절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코로나19를 대비한 의견 수렴계획이 필요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특이사항은 없음. 2021. 10. 25. 심의위원 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보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남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이·치수가능 뿐 아니라 생태축의 연속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 지역(대구달성하천습지, 우포늪 주요 칠새도래지 등), 수질 등 환경기능을 고려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계획수립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습지보호지역 및 랍사르습지, 자연공원, 주요 칠새도래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해야 함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안정성 등 영향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확정된 주변 개발계획, 공사중인 사업 등을 고려(누적 등)하여 대상지역 설정 필요 2. 토지이용 구상안 ○ 권수공간 지정시 하천 본래의 하상과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계획구간,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조사·제외지 내 경작지 현황 등) ○ 하천의 흐름(연속성)을 저해하는 하천내 대형 인공구조물 계획 지양 ○ 대구달성하천습지(1Km이격)와 우포늪 주요 칠새도래지가 계획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수립(보전, 제척 등) 3. 대안 ○ 대안설정시 습지보호지역 및 랍사르습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주요 칠새도래지 등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필요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칠새도래지 및 습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본 사업계획의 계획적 정성 및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중점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1. 10. 26. 심의위원 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남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남권역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하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 것.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하천기본계획수립 특성상 하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계획으로 별도의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목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현재의 주변 자연지형 및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여 수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함. 3. 대안 ○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시행 시 계획구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 영향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주변이 주거밀집지역과 논농사가 많은 지역은 대기질 중점 검토 요망.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고 하상 준설 등으로 발생하는 토사유출과 오탁수 영향으로 수생태계보전을 위한 방지책 제시할 것.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인 이천, 진천천 일부지역과 이천, 토명천, 창녕천에서 일부 별도관리지역이 위치하므로 보존계획 구체적 제시할것.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6. 기타 ○ 사업계획구간이 위치하는 지역은 낙본D, 낙본F, 낙본G, 낙본H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수질오염총량검토서 제출후 지역개발 사업부하량을 할당받아서 사업추진 2021. 10. 27. 심의위원 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영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하천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수립시 지역별, 수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수립대상 6개 하천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함.
수계 특성상 타 수계와 합류부 구간도 설정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북 성주의 경우 이천을 계획대상 하천으로 되어 다른하천은 낙동강이 합류지점으로 되어 있으나, 이천만이 백천의 합류 지점으로 되어 있어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면, 백천도 추가 지정하여 계획 수립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평가항목은 적절하고, 입지의 타당성 중 자연환경 보전4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평가하여야 함.
○ (평가범위) 계획수립대상 6개 하천 좌우구간과 수계의 특성상 타 수계와 합류부 구간도 설정대상지역에 포함하여야 함.
○ (평가방법) 현지조사,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영향예측을 시행하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계획구간의 수위변화를 파악 수리수문 검토 등 하천영향을 평가에 포함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주민설명회시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하여야 하고, 의견 수렴시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

2021. 10. 25.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영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의견 없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1. 10. 28.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사업명: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영권역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

□ 총괄 의견

- 하천정비는 계획구간뿐만 아니라 하류에도 수질영향이 크므로 공사 시 토사유출방지대책 및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에 악영향이 가지 않게 하며, 주변 유역에 다양한 법적보호종의 서식지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대상 지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안의 비교검토가 적절하게 검토된 것으로 판단됨.

3.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세부평가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환경분야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에 있을 시 대책을 강구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2021. 1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영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계획하천 주변 토사사출 방지, 유출방지시설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 악화, 자연보호종을 위한 서식지 조성 등 주민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가능한 대상지역을 폭넓게 선정하여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보완하여 검토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 좌우부지, 방호구역 공간 등 하천 주변 방호구역은 방화벽, 인공 지장인물의 간섭을 위한 파고-구덩이를 시설이 개선된 후, 하천의 이용을 위하여, 하천의 다목적 이용에 활용이 필요한 사항

3. 대안

- 하천의 다목적 이용에 활용이 필요한 사항은 중점적 조사 분석을 통해 하천의 이용에 활용이 필요한 사항은 하천의 이용에 활용이 필요한 사항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지역 환경영향 평가시 토사유출방지 대책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사후검토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 확인 조사를 실시 하여 기존 조사사항의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계획하천변까지 광범위하게 안전지대, 주민에게 안전대책을 지역주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대책을 고려한 대책 마련 등 주민설명회 및 현장방문 확인 조사를 실시 할 것임.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방화벽, 자연방호 등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기본 계획 수립을 보완함.

2021. 10.

심의위원: 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 주변 생활권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배울 수 있는 총량의 범위 안에서 계획수립 요망.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본류천으로 흐르는 지류천을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폭넓게 설정하여 주변생활권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 기본계획수립에 지정된 하천주변은 대부분 시설하우스 참외재배하는 지역 특성상 편정을 개발하여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하천을 흐르는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수원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별다른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코로나19로 대규모 주민들을 한곳에 모아 설명회를 가지는 부분에 있어 예외가 있으나 모일수 법적인 인원의 테두리안에서 몇차례의 설명회를 가져 현지 사정에 밝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에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므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수렴 요망.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별다른 의견 없음 (기본계획 하천주변 생활권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이 되도록 계획 반영했으면 좋겠음) 2021. 10. . 심의위원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반영수입되어 이해하는 <u>상향식 의제대사원</u>, <u>편의시설</u> 구축. ○ 맑고 깨끗한 하천 유지수를 위하여 하천바닥을 경지작으로 정비할 예정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등 <u>특이종류</u>에서 <u>법제</u>가 <u>나지</u>는 <u>현정</u> 요망 주변에 <u>나물</u> 많이있어서 <u>가뭄</u>, <u>홍수</u> 대비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습니다. 3. 대안 ☐ 의견없습니다.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전동차, 주민대포, 지역사회 활동자들의 동행하는 거처 의견수렴 필요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하천주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구 생각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21. 10. 12 심의위원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평가항목, 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강권역 6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이 결의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표2-1)공간범위 설정.(표2-2)하천별 공간현황 (그림2-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가 아주 잘 설정되었다고 봅니다. 2. 토지이용 구상안 계획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은 작목별 용도별 환경관련 지구, 지역을 지정하여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권 침해할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대안 하천 개발 계획의 특성이 잘 반영된 Clark 유역추진법을 대안으로 선정요망.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항목 설정(표5-1)과 (표5-2)의 항목별 조사, 예측 방법을 적극 권장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 의견 수렴은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3회 이상 실시 할 것을 요망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적절하다고 계획대상 하천의 입지 선정도 타당하다고 보여짐. 2021 10 28 심사위원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21. . .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건서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창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하천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수립시 지역별, 수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수립대상 6개 하천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함. 수계 특성상 타 수계와 합류부 구간도 설정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등 ○ (평가항목)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평가항목은 적절하고, 입지의 타당성 등 자연환경 보전4개 항목을 증점평가항목으로 평가하여야 함. ○ (평가범위) 계획수립대상 6개 하천 과입구간과 수계의 특성상 타 수계와 합류부 구간도 설정대상지역에 포함하여야 함. ○ (평가방법) 현지조사,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영향예측을 시행하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하천영향을 평가에 포함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주민설명회시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사용하고,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 2021. 10. . 심의위원 : 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창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계획 하천 내 및 주변 유역에 다양한 보호종의 서식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정비 시 계획 구간 외의 구간에도 수질영향이 크므로 공사 시 토사유출방지대책 및 수질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수질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적정하게 수립하였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안의 비교검토가 적정하게 검토되었음.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이 반영되었으므로 타당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계획사항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별도의 의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별도의 의견없음 2021. 10. . 심의위원 장
---	---

4.2.2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차천, 토평천, 창녕천)

- 협의회 심의의견중 공통위원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하천(낙동강유역환경청, 지자체, 주민대표, 민간위원 등)의 심의의견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고령보, 합천장남보, 낙동강창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대상 하천 주변의 영향예상지역과 주변지역 자연생태환경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적절히 선정하여야 함 - 토지이용 구상안 ○ 본 계획의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 구상안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안 ○ 대안별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안 검토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방법, 방법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 계획에 따른 영향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 생태계 조사는 직접 조사인력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주변 생태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10. . 심의위원 안 	강정고령보, 합천장남보, 낙동강창녕권역 하천기본계획(차천, 토평천, 창녕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강정고령보, 합천장남보, 낙동강창녕권역 하천기본계획[차천, 토평천, 창녕천]) < 사 업 개 요 > ○ 계획규모 및 범위 - 차천(8.88km) : 경남 창녕군 성산면 후천리 ~ 대구 달성군 현충읍(낙동강 합류점) - 토평천(30.0km) :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갈리 ~ 이방면(낙동강 합류점) - 창녕천(17.0km)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 창녕군 유어면(낙동강 합류점)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자목 하천기본계획 ○ 계획수립기관 / 승인기관 : 부산지방방과도관리청 ☐ 총괄의견 ○ 동 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등 규정에 의거하여 창녕군 관내 지방하천 차천, 토평천, 창녕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고려하여 본래의 자연생태계 보존·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의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사업구역 경제발전 사유 포함)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해당 하천의 현황사진(드론사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포함) 등을 제시 -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분류군에 따른 특성 및 생태계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강정고령보, 합천장남보, 낙동강창녕권역 하천기본계획(차천, 토평천, 창녕천)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 시 누락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함 - 하천생태조사 결과 자연도가 높은 구간은 가능한 한 보전하는 방안 강구 ※ 차천(생태·자연도 2등급, 거울칠새도래지), 토평천(우포늪, 사지포늪, 복지늪, 유어교습지,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거울칠새도래지), 창녕천(생태·자연도 1등급, 거울칠새도래지) ○ 기존 인공시설물에 대한 치수적·생태적 기능분석을 통한 존치·개설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철거하거나 자연 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소규모 전량)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15.3.,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기술 지침서(2014, 환경부)」 - 유로 변경시 변경 사유, 유로 변경 구간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3. 대안 ○ 대안은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만이 아닌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이·치수 및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 항목별 저감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저감방안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가. 항목별 심의의견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 하천과의 직·간접적으로	강정고령보, 합천장남보, 낙동강창녕권역 하천기본계획(차천, 토평천, 창녕천)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및 시설물계획 연계성을 검토·제시 ※ 국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통수해종합정비계획 등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각 항목별 조사(문헌, 현지, 탐문 등)시기 및 지점, 항목 및 횟수 등은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조사결과를 지형도에 표기 - 하천 구간별로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 지역의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제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기존 지점·통계·조사자료 등 문헌조사 시 5년 내 가장 최근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조사지점(도면) 및 출처를 표기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 내륙습지 조사, 거울칠새 동식물조사 조사 등 - 하천 준설, 골재채취 등 하천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획은 풍수해 정비종합계획 등 치수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타당성 고려 - 계획하천별 생태적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적 영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하천별로 구성하여 제출 ○ 수환경의 보전 - 치수적 안정성과 하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하천 제방 및 호안 중측의 경우 대면 높아지는 홍수위를 대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방축조 공사 시 자연생태계 영향도 유발되므로 친환경적 수해 위험 저감방안으로써 하천 주변의 나지 등의 홍수터를 매입하여 저류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제시 - 사업시행 시 오·폐수,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 하천의 통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통한 수리 영향을 예측하고, 계획홍수위 및 하상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종단면도 제시 - 계획평면도 상에 하천구역(기존 및 변경 구분), 축조 및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하천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 검토 -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확폭, 제방 및 하도정비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강장녕권역 하천기본계획(차천, 도령천, 장녕천) 계획을 지양하고,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농경지, 가옥 등)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홍수관리 구역 지정, 천변저류지 등)을 우선 검토 ○ 환경기준 부합성 - 주거지역 등 인근의 정온시설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 마련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하천 자연도 평가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관리계획 수립 ※ 침수구역 신규 지정은 신중히 검토 - 지장물 철거과정 또는 공사시 발견될 수 있는 오염 토양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제시 -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지 처리방안 등 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 방송, 유관기관 활용 등)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등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시 방역 조치 등 다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함 * (참고) 코로나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 및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 - 군집행사 기피로 대면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미진하다고 계획수립기관이나 승인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설명회(영상 설명, SNS, 기타 정보통신망 등)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기관장에게 통보 - 설명회에 따른 지역주민의 군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기간 및 시간을 분산하여 대면 설명회를 실시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강장녕권역 하천기본계획(차천, 도령천, 장녕천) ※ 분산된 기간/날짜 분산 또는 시간대, 10시~12시, 13시~15시, 15시~17시와 충분한 개별 공간(독립공간 또는 충분히 이격된 책상 배치 등)에서 사업자 및 전문가 등이 상주하여 방문자에게 설명 - 설명회 개최 기간 또는 시간을 분산하여 시행하는 경우 및 비대면 설명회를 병행 개최하는 경우 개최 방법과 참여방법, 의견 제출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 고지 6. 기 타 ○ 급회 계획에 반영(신설, 제거설 등)된 개수계획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기수립 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별 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의 반영결과 및 해당 쪽수를 프로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021. 10.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강장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 총괄 의견 ○ 본 건은 강정고령보, 합천장녕보, 낙동강장녕권역 내 6개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계획 연장 총 92.88km)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입니다 ○ 계획수립 시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지방하천 6개소를 하나의 권역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하천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계획하천의 자연생태현황에 대한 평가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계획비교를 위한 대안 평가 시, 계획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획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계획의	유형별(치수, 이수, 환경, 공간관리 계획)로 각각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하천역의 보전과 복원계획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천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치수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하천이 자연경관 및 생태적으로 인근지역과 연결된 경우, 수변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하천설계빈도 상황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수립 대비 홍수량 변동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설계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 제방, 횡적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토지이용현황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수자원 이용 및 홍수, 하천구역 편입 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6. 기 타 ○ 의견없음 2021.10.27. 심의위원: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도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남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이·치수가능 뿐 아니라 생태축의 연속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 지역(대구달성하천습지, 우포늪 주요 칠새도래지 등), 수질 등 환경기능을 고려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계획수립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습지보호지역 및 탐사르습지, 자연공원, 주요 칠새도래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해야 함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안정성 등 영향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확정된 주변 개발계획, 공사중인 사업 등을 고려(누적 등)하여 대상지역 설정 필요 2. 토지이용 구상안 ○ 친수공간 지정시 하천 본래의 하상과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계획구간,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조사·계획지 내 경각지 현황 등) ○ 하천의 흐름(연속성)을 저해하는 하천내 대형 인공구조물 계획 지양 ○ 대구달성하천습지(1Km이격)와 우포늪 주요 칠새도래지가 계획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수립(보전, 제척 등) 3. 대안 ○ 대안설정시 습지보호지역 및 탐사르습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주요 칠새도래지 등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필요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원세도래지 및 습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본 사업계획의 계획적 정성 및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중점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1. 10. 26. 심의위원 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도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남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사업지역에 대한 개발현황 및 자연생태현황,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대안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구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거지역 등 경은시설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해야함 ○ 하천정비사업은 주변부서와 협의 후 수질오염 총량제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환경기준을 만족시킬수 있는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수환경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중 하천정비로 인한 계획하천의 BOD, T-p, 생태계 조사항목 추가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계획 수립시 인근 주민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2021. 10. . 심의위원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정도령보, 합천창녕보, 낙동강남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기존의 하천법이나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基本計劃을 세우고 시행하지만 제일 중요한 강우·기상 등 自然環境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옛 하천의 모습 그대로 물의 流達이나 가뭄피해 시 하천수의 이용이나 모든 것을 고려한 되었으며 합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 창녕군 5개읍.면이 접해있는 토평천. 창평천은 하천수가 생태의 보고인 우포습지로 유입되는 것으로 특히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특히 支線에 유입되는 분노치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기존 하천의 폭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주위에 하천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대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3. 대안 ○ 장기의 안목으로 주위의 농경지 라 말지라도 하천부지는 기본 하천계획에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합니다.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모든 평가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모든 일을 進行하면서 계획 또는 檢討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제일 중요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만 100%의 만족을 가질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등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원시적인 자연습지인 우포늪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라. 특히 습지보호와 생태 환경 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1. 10. 25.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강령고령보, 합천장남보, 낙동강남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창녕군에 위치한 토평천은 우포늪 습지보호구역이 위치하여 습지보호구역은 보전위주의 하천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람 ○ 우포늪 습지보호구역에 토사유출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저감대책을 준비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별다른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별다른 의견없음 3. 대안 ○ 별다른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별다른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창녕군내 계획하천은 차천, 토평천, 창녕천으로 계획하천의 분포 범위가 넓고, 우포늪, 화양산 군립공원, 상월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견수렴 계획이 필요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별다른 의견없음 2021. 10. 18 심의위원 	공 란
--	-----